

분류번호 :

97 . 3 . 21

수 신 : 박원석

발 신 : 서울지방검찰청

검 사 : 어기석

제 목 : <sup>고소</sup><sub>고발</sub> 사건처분결과통지

피의자 정우택 에 대한 <sup>고소</sup><sub>고발</sub>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.

사건번호	96. 형제 100696 호
피의자	성명 정우택
	주민등록번호
처분일자	처 분 죄 명
97 03 20	상해
	처 분 내 용
	기소유예

### 안 내

○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

1.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(검찰청법 제10조)를 하거나
2. 10일 이내에 재정신청(다만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한함. 형사소송법 제260조)을 할 수 있으므로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항고장 또는 재정신청서를 위 기일내에 우리청에 제출하셔야하며 위 기간경과 후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더라도 기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 또는 참고인 중지처분된 경우 그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가 발견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